대출상품검색

영업점

부도임대주택퇴거자전세자금대출

부도임대주택에서 퇴거 당하거나 퇴거 당할 예정인 임차인을 위한 대출상품

대상고객 기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무주택세대주로 아래 상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대출한도 최대 50백만원







상담신청

상품안내

상품개요 부도임대주택에서 퇴거 당하거나 퇴거 당할 예정인 임차인을 위한 대출상품

▪ 부도임대주택에서 퇴거 당하거나 퇴거 당할 예정인 임차인 중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하고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대출고객

▪ 해당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대출신청일 현재 만19세 이상 무주택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매각허가결정일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민등록 전입을 완료하여 대출 신청일 현재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전입)중이거나 경락허

가 결정일 이후 퇴거 당한 자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가 주택으로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 100㎡) 대출대상주택

및 임차보증금 수도권 3억원(지방소재 2억원) 이하의 주택

대출한도 최고 5천만원이내

* 단,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에 의한 경우는 3천만원 이내

* 대출담보: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으로 운영

대출금리 연 3.1% (변동금리)

*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독거노인은 연 1.1%

대출기간 2년(2회 연장가능하며 최장 6년까지 대출)

* 대출갱신의 방법 : 은행의 심사를 통해 대출기한 연기 가능

상환방법 일시상화

* 월 1회 이자를 납부하며, 만기일에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는 방식

중도상환해약금 없음

이자계산 이자 및 지연배상금은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다.(후취)

지연 배상금 지연배상금은 납입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1) 기한이익상실 전

- 3개월 이내: 이자율 + 연4.0%

- 3개월 초과: 이자율 + 연5.0%
- 2) 기한이익상실 후 (대출금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율 적용)
- 3개월 이내 : 이자율 + 연4.0%
- 3개월 초과 : 이자율 + 연5.0%
- * 지연배상금률인 연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10%를 적용

대출비용

인지세법에 따라 대출 신규 약정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각 50%씩 부담

* 인지세

대출금액	인지세	인지세 부담	
		고객	은행
5천만원 이하	비과세	비과세	비과세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0,000원	35,000원	35,000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0,000원	75,000원	75,000원

※ 시행일: 2016.03.02

추가사항

필요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원본지참 대조)
- 지자체장의 대출대상자 추천서
- 임차주택 건물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 건축물관리대장(필요시, 1개월 이내 발급분)
- 부도임대아파트의 경매에 의한 배당표 사본(새로운 경락인과 계약체결시)
- ▶ 가족관계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 : 배우자 분리세대, 단독세대주(결혼예정자 포함) 의 경우
- 주민등록등본 (1개월 이내 발급분)
- 결혼예정증빙서류(예식장계약서, 청첩장)
- 근로자인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또는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소득금액증명원 등

⊘ NOTICE

- 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받으실수 있습니다.
- 이 상품안내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관련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 대출신청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대출 취급 불가 (단, 대출 신청물건지가 해당 물건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 수입 인지대, 보증료 등 부대비용은 고객 부담이며, 대출만기 전 중도상환에 따른 추가부담은 없습니다.
- 대출조건 등은 정부의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금융기관 신용관리대상자 등의 여신비적격자에 대하여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휴일에 인터넷뱅킹 등을 통한 원금 및 이자 상환이 가능합니다.
- ▶ 본 대출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의 신청이 불가합니다.
- 본 상품은 기금대출거래약정서 제 12조 대출계약의 철회에 따라 서면 전화 모바일을 통해 대출계약의 철회가 가능한 상품입니다.
- 대출이자 미납 및 대출 만기 후 미상환시에는 여신 거래약정에서 정한 기간별 연체이자율이 적용되고 신용정보관리대상 등록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1577-8000)나 영업점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사전심사필 제2025-42206-2호(2025.01.24~2026.01.01)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가계용) 대출거래약정서 (주택도시기금대출: 가계용) 주택도시기금대출(가계용) 상품설명서 관련자료

□ 도움이 필요하세요?

- '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고객님은 고객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상담: 1599-8000 ① 신용대출상담(서비스코드 04) ② 담보/전세대출상담(서비스코드 05)
- ' 상담가능시간: 09:00~18:00 (은행휴무일 제외)

목록